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32109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단 피고 C은 72,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61,29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6.9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구상금 채무

- 1) 원고는 2019. 7. 24.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은행, 보험가입금액을 66,000,000원, 보험기한을 2019. 8. 6. ~ 2021. 7. 23.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 2)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B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6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21. 7. 23.로 정하여 피고 B에 대출하였다.
- 3) 2020. 7. 7.경 피고 B의 위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020. 10. 21. 현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인한 대출금채무 61,298,355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4) 이 사건 보험약정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다만, 소외 은행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율을 적용한다).

나. 채권양수

- 1) 피고 B은 2019. 6. 27.경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제1층 F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7.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임차보증금 중 담보한도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은행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9. 8. 5.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20. 10. 21.경 소외 은행은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C에게 그 질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 B은 현재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 C에게 명도하고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단 피고 C은 근질권 담보한도액인 72,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61,298,3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2020. 11. 20.까지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3. 11.까지는 소외 은행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6.9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 B에게 60,458,8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